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40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최은석 · 김기현 · 김성원
서지영 · 이종욱 · 서일준
김정재 · 진종오 · 최수진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올리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 전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의 제목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을 “주택을”로, “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를 “부담부증여는 제외하며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5조의5(<u>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u>) ① 「 <u>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u> 」에 따라 지정된 <u>인구 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u>	제75조의5(<u>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u>) ① ----- ----- <u>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u> ----- ----- ----- ----- ----- ----- ----- ----- -----
1.·2.(생략) ②(생략)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 <u>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u> 」에 따라 지정된 인구 <u>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보증에는</u>	1.·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 -----주택을-----부 담보증에는 제외하며 취득당시 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u>제외한다</u>)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 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 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④ (생 략)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	--